

한국정보과학회 운영규칙

1982년	4월 11일	제정
1987년	10월 23일	일부 개정
1988년	1월 19일	일부 개정
1994년	4월 22일	일부 개정
2001년	10월 19일	일부 개정
2004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2005년	11월 11일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2010년	6월 17일	일부 개정
2010년	10월 28일	일부 개정
2011년	11월 30일	일부 개정
2015년	12월 18일	일부 개정
2016년	6월 9일	일부 개정
2016년	12월 2일	일부 개정
2017년	5월 26일	일부 개정
2018년	4월 13일	일부 개정

제 1 장 목 적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33조에 의하여 정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회 및 퇴회

제 2 조(입회 신청 절차)

1.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주니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 3 조(회원자격 인정 절차)

1.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주니어회원 입회신청자는 회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2. 특별회원, 단체회원 입회신청기관은 회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4 조(회원의 퇴회 절차)

회원으로서는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후, 퇴회원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비

제 5 조(회비의 납부 의무)

1.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주니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6 조(회비의 결정)

1. 본회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특별회비 및 단체회비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정관 및 각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회원, 주니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4. 단체회원은 별도의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아니하고 각종 문헌만을 제공한다.

제 8 조(회비의 납기)

1. 정회원, 학생회원, 주니어회원의 회비는 회비유효기간 3개월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2.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회비는 당해연도 3월말로 한다.

제 9 조(회비체납에 대한 처분)

본회 회원이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논문지 구독회비는 회비종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회비 및 기증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 무

제 11 조(부회장의 사무분장)

회장은 이사 중에서 부회장을 선정하여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학회 회무에 대한 부회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부회장은 인사문서 및 기타 일반문서에 관한 사항과 금전출납, 재산관리, 기금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학술부회장은 논문지의 편집, 주요 학술행사, 학술상 대상 후보자 선정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기타 사업에 대한 부회장별 사무분장은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상임회장단회)

1.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전조의 1~3항의 부회장 중에서 상임회장단회를 구성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회장단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긴급한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3. 상임회장단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상근 직원)

본회에는 사무를 집행하는 상근직원을 두고, 이의 시행상 필요한 사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 14 조(위원회의 설치)

1. 본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재무위원회
 - (3) 법제포상위원회
 - (4) 선거관리위원회
 - (5) 분과발전위원회
 - (6) 지부발전위원회
 - (7) 자문위원회
2. 기타 행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1항의 위원회는 학회의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반 시행 사업에 대해 회장단 및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임시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5 조(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소사이어티 및 연구회의 설치)

본회는 정관 제5조 3항에 따라 각종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의 규정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장 지 부

제 17 조(지부의 설치요건)

본회의 지부는 국내 및 해외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지부임원의 정원)

본회의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 인, 부지부장 2 인.
2. 지부이사 약간명, 지부감사 2 인.

제 19 조(지부임원의 선출)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지부에서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엔 회장이 임명한다. 기타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지부설치규정에 따른다.

제 20 조(지부장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1 조(지부에 대한 지원)

본회는 다음의 금액을 지부의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의 3할 이내
2. 종신회비를 제외한 지부 신입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년도 회비 이내
3.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지원금.

제 22 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지부장은 매년 총회 1개월 전에 당해연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을 회장에게 보고하며,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회 지

제 23 조(회지 발간)

본회는 년 6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제 24 조(회지 배부)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단, 종신회원에 대한 회지 배부는 만 65세까지로 하고, 만 65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시에만 배부한다.

제 8 장 포상 및 장려

제 25 조(포상분야 및 대상)

본회의 포상분야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포상분야는 학술분야, 기술분야, 공로분야, 기타분야로 한다.
2. 포상의 대상 : 정보과학기술 발전 과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및 기관으로 한다.

제 26 조(포상분야별 상의 제정, 변경, 폐기)

1. 학술분야, 기술분야, 공로분야의 상의 제정, 변경, 폐기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기타분야의 상은 회장이 상의 제정, 변경, 폐기 할 수 있으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포상자 선정 및 포상)

1. 학술분야, 기술분야, 공로분야의 포상자 선정은 법제포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2. 기타분야의 상은 회장이 포상자를 선정 시행할 수 있다.

제 28 조(연구보조비의 지급)

회장은 정보과학 학술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에게 연구결과가 정보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된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9 장 징계

제 29 조(징계)

1. 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① 정관, 규칙, 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
 - ②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③ 본회의 사업 및 운영 참여하여 그 임무를 해태, 배임, 기망한 자
 - ④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경고 :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 ② 자격정지 : 정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정지기간동안 학회 임원 및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학술지에 논문 및 원고 게재,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③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3. 학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0 조(절차)

1. 징계는 상임회장단회의 발의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행한다.
2. 상임회장단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상임회장단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1. 본 규칙에 의한 기구의 임원 및 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본 규칙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